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생성자료 납본 제외〉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49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 · 윤준병 · 이성윤 · 허성무 · 유동수 · 박홍근
민병덕 · 이연희 · 권칠승 · 전진숙 · 김남희 · 조정식
박해철 · 박 정 · 송옥주 · 김영진 · 강준현 의원
(17인)

2. 제 안 일 : 2026. 3. 13.

3. 회 부 일 : 2026. 3. 16.

※ 의안번호 : 1744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납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3조 및 제14조).

참고로,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정안의 의결 전제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0호)에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로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로 정의하고 있음.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u>도서관자료</u> 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 ----- ----- ----- <u>도서관자료(인공지능 생성자료는 제외한다)</u> ----- -----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 자료(<u>온라인 자료</u>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⑤ · ⑥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u>온라인 자료</u>”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u>인공지능 생성자료 및 온라인</u>-----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u>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 ----- -----“<u>온라인 자료</u>”, “<u>인공지능 생성자료</u>”-----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과태료) ① 제7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자료의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현행	개정안
	원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부과·징수한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자료¹⁾를 납본받고 있음.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납본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²⁾

「국회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³⁾에 따라 공공기관

- 1)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2)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상 절차 등)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본 보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시가(市價)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 3)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납본자료 수집 지침」 제3조(납본 심사)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 아닌 자는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려고 할 때에는 자료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도서관장은 명세서를 심사하여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국회도서관 납본자료 수집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⁴⁾

[표-2] 「국회도서관 납본자료 수집 지침」상 납본제외자료의 종류

1. 공통사항
 - 가. 복본자료(재판, 중쇄자료 포함)
 - 나. 개정판 중 제목, ISBN 등 고유 식별자만 달리하고 내용 및 출판사가 같은 도서
 - 다. 동종의 자료가 출판사를 달리해서 출판되었으나, 페이지 수 및 형태사항이 같은 자료
 - 라. 내용은 같고 합본·분책하여 발행 또는 제작된 자료
 - 마. 명칭이나 실체가 불명확한 단체가 발행하거나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발간한 자료
 - 바. 통상적인 도서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인 자료
2. 내용사항
 - 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각종 문제집
 - 나.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종교 등을 선전·홍보하는 자료
 - 다. 종교관련 개론·이론서를 제외한 종교자료
 - 라. 학습, 교양용을 제외한 만화 및 게임·퍼즐 등 오락용 자료
3. 형태사항
 - 가. 낱장 악보
 - 나. 복사본, 스프링 제본자료
4. 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본 부적합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내규」에 따른 국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4) 운영상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국회도서관 납본자료 수집 지침」을 근거로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납본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최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출판물이 급증함에 따라 납본 수집과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⁵⁾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 출판사의 저작물은 납본 접수되었으나 내용 반복 등의 사유로 납본 제외되었다고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출판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고 납본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⁶⁾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출판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동시에,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생성 자료에 관한 정보의 거짓 표시 또는 은폐하여 납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자료가 납본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부합되게 수집·보존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조선일보, “AI가 9000권 찍어내면, 9000만원 줘야 하는 공공도서관”, 2025. 12. 2.

AI 출판이 등장하면서 ‘지식 자원 아카이빙과 후대 전수’(국립중앙도서관), ‘의정 활동 지원’(국회도서관)이라는 납본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 출판사가 AI로 연간 수천 권의 책을 쏟아낼 수 있는 시대에 이런 출판물들까지 모두 국가가 사들여서 후대에 전승한다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 국립중앙도서관 보도자료(2026. 2. 3.), “AI 시대 출판 환경 변화 속 국립중앙도서관 합리적 납본제도 개선 방안 모색”, p.1

첫째, 인공지능 생성자료 납본 의무 대상 제외(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인공지능 생성자료 중에 도서관자료로서 수집·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활용 또는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료 등도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온라인 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의무 대상에 포함⁷⁾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예외적으로 납본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인공지능 생성자료 거짓 표시 또는 은폐 시 과태료 부과(안 제7조제5항 및 제14조)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자료 정가(비매자료인 경우 발행 원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⁸⁾

이는 현행 「도서관법」 제55조⁹⁾에서 납본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

7)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8) 개정안의 의결 전제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0호)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9)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5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는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도서관자료의 정가(비매자료인 경우 발행 원가)의 10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특정 금액이 아닌 정가 또는 발행 원가에 비례되도록 하되 인공지능 생성자료 거짓 표시 또는 은폐 금지 의무 위반이 그 의도성·부정적인 면에서 납본 의무의 단순한 위반보다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도서관법」과 달리 현행 「국회도서관법」은 납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데,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납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함께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 인공지능 생성자료 납본 의무 대상 제외, 인공지능 생성자료 거짓 표시 또는 은폐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① 국회도서관은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하여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납본 의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17
